

비공개

<이 협약서는 사업자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변경실시협약서

2013. 02. 25.

사 천 시 /
천 지 창 조 세 움 주 식 회 사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BTL) 변경실시협약

사천시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천지창조세움 주식회사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실시협약(이하 “기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천지창조세움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공사를 진행하여 2012년 12월 31일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함으로써 동년 01월 01일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총민간투자비를 확정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총민간사업비를 금 13,118백만원(2008년 12월 31일 고시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확정하며,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를 반영하여 총민간투자비를 금 15,065백만원으로 확정한다.

제2조 (실시협약 별표의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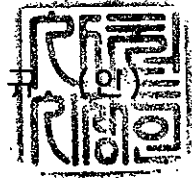
제1조에 따른 총민간투자비 확정에 따라, 기존 실시협약 별표01 본 사업의 개요, 별표02 본 사업의 구조, 별표03 출자자의 구성 및 지분율, 별표04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별표0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별표10 임대료 및 지급스케줄, 별표11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일정표, 별표12 본 사업시설의 수요, 별표15 재무모델(운영비산출내역서포함<C/D>), 부록01 임대형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성과요구 수준서포함), 부록05 총사업비 분석(합의)결과를 본 변경실시협약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5, 부록1, 부록5로 각각 변경하기로 한다.

제3조 (기존 실시협약과의 관계)

제1조, 제2조 등 기존 실시협약과 본 변경실시협약이 내용상 상충하는 경우 본 변경실시협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하며, 기존 실시협약의 나머지 조항 및 별표, 부록들은 모두 그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2013년 2월 25일

사천시장
정 만



천지창조세움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상 용

